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다양한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 신혼집의 전세 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된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

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녀(A)가 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여 준다.

위 자녀(A)가 실제 결혼을 하여 2025년 7월 1일 첫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최대 1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1억 원의 혼인공제를 받은 자녀(A)는 추가로 출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text{증여재산가액} + \boxed{10\text{년 내 증여재산}} - \boxed{\text{담보된 채무}} = \boxed{\text{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당시 시가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기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boxed{\text{증여세 과세가액}} - \boxed{\text{증여재산공제}} = \boxed{\text{과세표준}}$$

[증여자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1억 원(혼인 · 출산)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친족: 1천만 원

$$\boxed{\text{과세표준}} \times \boxed{\text{세율}} = \boxed{\text{산출세액}}$$

- 10% ~ 50%
- 창업자금 10%
- 기업승계 10%(20%)

$$\boxed{\text{산출세액}} + \boxed{\text{세대를 건너뛴 증여 대한 할증과세}} - \boxed{\text{세액공제 등}} = \boxed{\text{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의 30%(40%) 할증
- 신고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박물관 자료 등 정수유예